

의안번호	제 210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9월 일 (제 303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응천 교육의원
발의연월일	2011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전용천 교육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11년 9월 9일
- 발 의 자 : 전용천, 최미애, 장병학,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하재성의원(7인)

1. 개정이유

- 보조금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 이의신청” 등의 조문 신설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는 기관카드 사용을 명문화하고, 교부 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안 제8조의2)
- 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안 제18조의2)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11. ~ 9. 1.) 결과, 특이사항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5항에 따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보조금이라 함은 교육감이”를 “보조금이란 충청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사업 이라 함은”을 “보조사업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와 제2항제9호의 “기타 교육감”을 “그 밖에 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그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부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조금의 사용)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기관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카드 사용이 어려운 인건비 등 교육감이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를 “교부결정을 한 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제1호 “기타 시설”을 “그 밖의 시

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에 의거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4조 중 “얻은”은 “받은”으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를 “실적 보고서와 지출증빙서,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하고,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17조 중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을 “거짓 또는 부정한”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그 내용
2. 교부 결정의 취소
3. 보조금의 반환명령

4.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보조금”이라 함은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②이 조례에서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③이 조례에서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9.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p>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p>	<p>“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 -----제29조제5항에 따라----- ----- 등에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보조금”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p> <p>② 이 조례--“보조사업”이란 -----.</p> <p>③ 이 조례-- “보조사업자”란 -----.</p> <p>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 보조금-----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교육감-----</p> <p>② 제1항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그 밖에 교육감 -----</p>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제4조에 따른 ----- ----- -----</p>

현행	개정안
<p>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u>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②교육감은 <u>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u>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8조(교부방법) ①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p> <p>②공공단체에 대하여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제8조의2(보조금의 사용) <신설></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u>보조금 교부 결정 시 -----</u> <u>----- 상응하는 비율-----</u> <u>-----</u> <u>교부 목적에 달성하는 데에-----</u> <u>-----.</u></p> <p>②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u>보조사업의 완료로 -----</u> <u>----- 많은 -----</u> <u>----- 범위</u> <u>에서 -----</u> <u>-----</u> <u>-----.</u></p> <p>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 <u>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제6조에 따른---</u> <u>-----불여-----</u> <u>-----.</u></p> <p>제8조(지급방법) ① 공사비는 ----- <u>----- .</u></p> <p>② 공공단체에 ----- <u>-----</u> <u>---</u></p> <p>제8조의2(보조금의 사용) ① 보조사업자가 <u>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u> <u>기관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u> <u>기관카드 사용이 어려운 인건비 등 교</u> <u>육감이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p>

현행	개정안
<p>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 -----<u>아니</u> ----- -----<u>된다.</u></p>
<p>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u>얻어야</u> 한다.</p>	<p>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 ----- ----- ----- -----<u>받아야</u>-----.</p>
<p>제12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승인을 <u>얻어야</u> 한다.</p>	<p>제12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 ----- ----- ----- <u>받아야</u> --.</p>
<p>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u>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u>보조사업자</u>----- -----<u>받은</u> ----- -----<u>실적 보고서와 지출증빙서,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u>교육감은</u>----- ----- ----- ----- -----.</p>
<p>제16조(보조사업의 보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u>지체없이</u>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u>지체 없이</u> -----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u>다음 각 호</u></p>	<p>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u>다음 각</u></p>

현행	개정안
<p>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허위</u>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p> <p>4. (생략)</p> <p>제18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8조의2(이의신청) <신설></p> <p>제19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p>	<p><u>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거짓</u>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p> <p>4. (현행과 같음)</p> <p>제18조(감독) ----- ----- ----- ----- -----.</p> <p>제18조의2(이의신청) ① <u>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p> <p>1. <u>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그 내용</u></p> <p>2. <u>교부 결정의 취소</u></p> <p>3. <u>보조금의 반환명령</u></p> <p>4. <u>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u></p> <p>②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19조(준용) <u>그 밖에</u> ----- ----- -----<u>같은 법 시행령</u>----- -----.</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시행 2011. 9. 9][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일부개정]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